##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영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9

발의연월일: 2024. 6. 18.

발 의 자:권영세·임이자·구자근

강대식 • 안철수 • 박대출

이인선 • 조경태 • 서일준

김소희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로, 도시철도시설, 철도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 방송 및 이동식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,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·공표하도록 규정함.

그런데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대상, 기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방법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의 집행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재난방송 등을 수신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범위, 설치의 기준 및 조사의 방법·절차 등 제도 운용기준에 관한 구체적 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방송 등의 수신시설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 임(안 제40조의3).

법률 제 호

##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설치대상의 범위·설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제40조의3(재난방송등	수신시설	제40조의3(재난방송등 수신시설
의 설치) ①・② (생	략)	의 설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	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
		설치대상의 범위・설치기준 및
		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・절
		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		령으로 정한다.